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21호 2024. 4. 10(수)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61호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1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4년 4월 10일

남원시 훈령 제 461 호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신규면허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실제 남원시”를 “신규면허: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남원시에서 운전한”을 “시에서 운전한”으로, “자이어야 한다”를 “사람”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2. 양수·대리운전·상속승계: 신청(신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신청(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용차량을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나. 신청(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자가용(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차량을 과거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 신청(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1/2환산)의 무 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과거 3년이상인 사람 제7조제1항제2호 중 “남원시에”를 “시에”로 하고,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전북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거주기간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p> <p>1. <u>신규면허시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실제 남원시에서 거주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2년이상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중 2년 이상 계속하여 남원시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u></p> <p>2. <u>양수시, 대리운전시, 상속승계시 운전경력은 신청(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사업용차량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거나 자가용(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차량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거나 또는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1/2환산)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u></p>	<p>-----.</p> <p>1. <u>신규면허: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실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 ----- ----- <u>시에서 운전한</u> ----- <u>사람</u></p> <p>2. <u>양수·대리운전·상속승계: 신청(신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p><u>가. 신청(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용차량을 과거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u></p> <p><u>나. 신청(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자가용(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차량을 과거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u></p> <p><u>다. 신청(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차량(1/2환산)의 무사고</u></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2항의 자격요건은 당해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u>감안하여</u>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완화할 수 있다.</p> <p>제7조(대리운전) ①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대리운전을 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하고 수리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면허자의 택시운전자격증은 대리운전 기간동안 <u>납원시에</u> 보관하고 대리운전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 대리운전)을 <u>전라북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u> 이사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잘볼 수 있도록 차내의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p> <p>3. (생략)</p> <p>② (생략)</p>	<p><u>운전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과거 3년이상인 사람</u></p> <p>③ ----- ----- ----- <u>고려하여</u> ----- -----.</p> <p>제7조(대리운전)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시에</u> ----- ----- ----- <u>전북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u>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